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07.09)

다올중국 1 등주증권투자신탁[주식] (AL894)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다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2 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또는 홍콩 주식 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중국시장 고유의 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다올중국1등주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 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다올중국1등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그 밖에 채권과 어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주식(중국 또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1등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개별적 위험관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위험 관리를 합니다			
	<table> <tr> <th>모투자신탁 명칭</th><th>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th></tr> <tr> <td>다올 중국1등주증권 모투자신탁 [주식]</td><td> <주요 투자대상> 외국주식 60% 이상(중국 또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에의 투자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또는 홍콩 증권 시장에 상장된 중국1등 기업주식(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ADR 포함)에 투자하여 향후 주식상승에 따른 투자 자산의 가치증대를 추구 - 홍콩 H주, 후강통 및 선강통 제도를 통한 중국 A주에 투자(후강통 제도란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케하는 제도이며, 선강통 제도는 심천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케하는 제도임) - 하나증권(리서치) 자문을 통한 Top-Down 방식의 종목 선정 실행 - 지속적 초과성장이 예상되는 섹터 혹은 산업의 선두기업 (Leading Company)에 집중 투자 - 중국의 초대형 내수시장 본격 성장에 따른 보험, 음식료, 제약 등 소비재 중심 종목 투자 - 각 종목별 동일비중 투자원칙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비중 조정 </td></tr> </table>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다올 중국1등주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다올 중국1등주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 투자대상> 외국주식 60% 이상(중국 또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에의 투자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중국 또는 홍콩 증권 시장에 상장된 중국1등 기업주식(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ADR 포함)에 투자하여 향후 주식상승에 따른 투자 자산의 가치증대를 추구 - 홍콩 H주, 후강통 및 선강통 제도를 통한 중국 A주에 투자(후강통 제도란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케하는 제도이며, 선강통 제도는 심천거래소와 홍콩거래소의 교차거래를 가능케하는 제도임) - 하나증권(리서치) 자문을 통한 Top-Down 방식의 종목 선정 실행 - 지속적 초과성장이 예상되는 섹터 혹은 산업의 선두기업 (Leading Company)에 집중 투자 - 중국의 초대형 내수시장 본격 성장에 따른 보험, 음식료, 제약 등 소비재 중심 종목 투자 - 각 종목별 동일비중 투자원칙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비중 조정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2025/01/02 ~ 2026/01/01	최근2년 2024/01/02 ~ 2026/01/01	최근3년 2023/01/02 ~ 2026/01/01	최근5년 2021/01/02 ~ 2026/01/01	설정일이후 2014/01/02 ~ 2026/01/01
수익과 위험 오판 보수채권(C)	2014-01-02	48.04	32.45	12.09	-0.76	7.31
비교지수	2014-01-02	26.38	20.64	8.80	-3.95	0.55
수익률 변동성	2014-01-02	23.47	24.08	22.67	22.82	20.78

(주1)비교지수 : MSCI China Index 90% + Call 금리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최초설정일부터 2018년 2월 21일까지 “HSCEI 90% + Call 금리 10%”를 사용하였으며, 2018년 2월 22일부터 상기의 비교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에 미설정 또는 전부해지된 종류의 수익률은 표기되지 않으며, 전부 해지 후 재설정된 종류의 경우에는 재설정 이후의 수익률이 표기됩니다.

(주5)기재가 생략된 종류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06.30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종희	1983년	책임 (팀장)	9개	1,284억	-	-	61.45	38.65	13년 9개월
김시청	1995년	부책임 (과장)	-	-	-	-	61.45	38.65	-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등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국시장 고유의 위험	중국 증권시장은 아직까지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므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증권 시장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외환 환전, 해외송금 제한, 조세제도 등의 규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불투명성,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u>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의 관리방안으로는 각 통화별로 외화표시자산의 약 90%~100%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통화별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u> 그러나, 환헷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 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관련 위험	해외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가 가능한 중국주식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세에 대하여 잠정적으로(Tentatively) 면제됩니다. 그러나, 중국본토의 자본시장 개방의 정도, 거래소 접근한도의 신규허용, 한중간 조세협약의 개정 및 조세정책 변화에 따라서 자본이득세등의 적용원칙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는 세금의 항목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 양국간에 이중 과세 조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본토와 홍콩 증시 교차매매의 거래 한도액에 따른 위험	두 증권 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일별 및 총액한도)에 따른 투자 제한으로 주식매수 타이밍을 놓치거나, 일정기간 중국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한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한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운용전략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홍콩 중 어느 한 쪽이라 도 증권거래소가 휴장일 때는 동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	·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시 경과 후: 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방법	· 17시 이전: 4영업일 기준가 6영업일 지급 · 17시 경과 후: 5영업일 기준가 7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준가	<table><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aol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table>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1.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대금 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집합투자업자	다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788-8400/ 인터넷홈페이지: www.daolfund.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7월 16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령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및 기금,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투자자 등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하거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납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거래자가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daol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daolfund.com)